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540
----------	-----

2024. 10. 2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0. 10. / 남양주시장
나. 회부일자 : 2024. 10. 10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0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관계 법령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 환경에 맞는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관계 법령 변경(안 제2조제4호, 제9조제1항, 제12조제1항·제3항, 제21조)
-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 -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
 -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 →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
- 용어 정비(안 제3조 ~ 제7조, 제20조)
- 정보화부서 → 관리부서
 - 기타 → 그 밖에

- 대표 홈페이지 내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라, 전자우편 계정 보급 관련 조항을 삭제함 (안 제3조제2항6호, 제5장제16조)
-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함
 - 국민신문고의 민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비밀번호를 수집하지 않음 (안 제11조제3항 ~ 제4항)
 - 개인정보보호 및 홈페이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회원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(안 제14조제2항)
-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>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(안 제6조제2항, 제13조제1항, 제18조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안건은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,
- 개인정보 민감도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절차와 정보수집 지양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,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